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입니다. 하지만, 과거 구릉지 등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시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의 범위가 시가지로 확대되고, 주거정비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‘재개발사업’으로 전환된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져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-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 기준을 10호 범위로
완화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[별표1]에서
시·도조례로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
규정하고 있는 노후·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기준을 일부
완화하는 사항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노후 주
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 주거안정이
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
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